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33 발의연월일: 2025. 5. 16.

발 의 자:주호영·박충권·김용태

조은희 · 김성원 · 김장겸

장동혁 · 김형동 · 박형수

김종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,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.

반면 「도시가스사업법」과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,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·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·보존·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이에 고압가스 제조·저장·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,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시공기록 등의 작성·보존·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(안

제13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3(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등의 보존·제출) ① 고압가스 제조시설 안에서의 고압가스설비(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), 고압가스저장·판매시설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고압가스시설"이라 한다)의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그 고압가스시설을 시공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제외한다.
 -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자
 -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중 가스 시설공사(제1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
 - ② 시공자가 고압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4조제6항, 제5조제2항, 제5조의3제2항, 제5조의4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시공자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·완공도면(전산보 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. 이하 이 조에서 "시공기록등"이라 한다),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·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사업자등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사업자등은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기록등 의 보존·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제1항 중 "특정고압가스,"를 "제1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특정고압가스"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공기록등의 작성·보존 제38조제1항 중 "고압가스시설"을 "고압가스 관련 시설"로 한다. 제4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

하게 시공한 시공자

제43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·보존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
- 1의3. 제13조의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사업자등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시공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3조의3(시설의 시공 및 시공
	기록등의 보존・제출) ① 고압
	가스 제조시설 안에서의 고압
	가스설비(고압가스가 통하는
	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설비를 말한다), 고압가스저장·
	판매시설 및 제20조제3항에 따
	른 사용시설(이하 이 조에서
	"고압가스시설"이라 한다)의
	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
	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그 고압
	<u> 가스시설을 시공・관리하도록</u>
	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고압가스시설의 설
	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제외한
	<u>다.</u>
	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
	<u>에 따라 산업·환경설비공사</u>
	업을 등록한 자
	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
	에 따라 기계설비・가스공사
	업 중 가스시설공사(제1종)를
	주력분야로 등록한 자

- ② 시공자가 고압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4조제6항, 제5조제2항, 제5조의3제2항, 제 5조의4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.
- ③ 시공자는 고압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 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・완 공도면(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 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 로 할 수 있다. 이하 이 조에 서 "시공기록등"이라 한다),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・보 존하여야 한다.
- ④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사업자등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등의

 사본을 받은 사업자등은 그 중

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

제25조(보험 가입) ① 사업자등,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 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략)

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수 있다. 다만, 제9호의 경우는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.

1. (생략)

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
존하여야 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
른 고압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
기록등의 보존・제출과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제25조(보험 가입) ①
제1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시
설의 시공자 및 특정고압가스-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
1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2. ~ 10. (생략)
- ② (생 략)
- 제38조(벌칙)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·특정설비 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 - ② ~ ④ (생 략)
- 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- 2. (생략)
- 제43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1의2.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
시공기록등의 작성・보존
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벌칙) ① 고압가스 관련
시설
 ② (취레기 기수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1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
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
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시공
<u>자</u>
2. (현행과 같음)
제43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

	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・보
	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
	작성한 시공자
<u> <신 설></u>	1의3. 제13조의제4항을 위반하
	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사
	업자등 및 시장·군수 또는
	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
	<u>시공자</u>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